

	기관의장
선	
람	

호외 2024년 1월 19일

익 산 시 보 발행자: 익산시청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발 행 처 : 홍보담당관

입 법 예 고

• 익산시 공고 제2024-201호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01

회				
람				

익산시청 홈페이지 http://www.iksan.go.kr

홍보담당관 TEL : (063) 859-5025

익산시 공고 제2024-201호

「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」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9일

익 산 시 장

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1995년 5월 10일을 익산군, 이리시의 통합을 기념하여 익산시민의 날로 지정·운영하고 있으나, 통합 29년이 지난 지금 지역통합의 완성에 따라 그 의미가 점차 약해지고 있어, 새로운 시대의 도약을 위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
- 나. 새로운 익산시민의 날은 각종 고증을 통해 韓문화 발상지로써 재부각되고 있는 우리 시 역사적 가치(정체성)와 과거 익산군민의 날 지정사례 등을 고려한 10월 3일로 변경 지정하여 익산 새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중 시민의 날 "5월 10일"을 매년 10월 3일로 함.
 - ▶목적 및 시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 - ▶시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(제3조)

3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 등은 2024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(참조: 행정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의견 제출사항
 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 및 그 사유)
 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 또는 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·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제출할 곳 : (우) 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(남중동)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(전화 : 063-859-5721, 팩스 : 063-859-5059)
- 라.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- 4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장수형 주무관(☎ 859-572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붙임 1. 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
 - 2.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익산시 조례 제 호

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의 날을 지정·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민의 날) 익산시 시민의 날(이하 "시민의 날"이라 한다)은 매년 10월 3일로 한다.

제3조(행사 운영 등) 익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 산 🕮 시 보 호외 2024년 1월 19일

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「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명 성 명 전화번호 (개인/단체) 의견 제출자 주 소 검토의견 (의견제출내용)

「익산시 시민의 날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익산시장 귀하